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0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9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3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본회의는 시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로서 개별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.
- 이에 따라 감정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함.
- 또한 안 제24조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상 감정노동 종사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표창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의 이행 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함(안 제23조).

-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삭제함(안 제24조).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 중 “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24조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3조(서울특별시의회 보고) 시장은 제8조제2 항에 따른 권고사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의 보고사항을 <u>서울 특별시의회에</u> 보고하여야 한다.	제23조(서울특별시의회 보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24조(표창) 시장은 감 <u>정노동자의 권익 보호</u> <u>및 증진에 이바지하고,</u> <u>감정노동의 가치 확산</u> <u>에 기여한 개인·기관</u> <u>· 단체 등에 대하여</u> <u>「서울특별시 표창 조</u> <u>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</u> <u>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서울특별시의회 보고)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고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(서울특별시의회 보고) 시장은</u> <u>제8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 및 제9</u> <u>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고사항을 서울</u> <u>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</u> <u>여야 한다.</u>